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 목 충북도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지원 현황
날 짜 2022. 9. 26.(총6쪽)

< 보도 자료 >

충북도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지원 현황

- 저출생 시대, 도내 지방정부 가정위탁아동 지원 확대해야 -
- 도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권고 지키는 곳 단 한 곳도 없어 -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호대상아동¹⁾ 및 지원대상아동²⁾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 수감,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 맡겨 보호·양육·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위탁 양육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이 해결되는 대로 아동과 친부모가 재결합하여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은 물론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내에 가정위탁 아동은 얼마나 될까? 지방정부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 2022년 4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를 확인하고자 도내 11개 시·군에 2021년 가정위탁 현황과 양육지원금, 아동용품구입비, 일시위탁보호비 지원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2021년 도내 보호대상아동 가정보호 비율 37.5%로 낮아

2021년 발생한 도내 보호대상아동 217명 중 73명(33.6%)은 귀가 및 연고자 인도되었고, 144명이 보호조치 되었다. 보호조치 내용 중 가정보호(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정, 입양, 입양 전 위탁)아동 비율이 37.5%(54명)로 낮고, 시설입소(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

-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2)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아동 비율이 62.5%(90명)에 이른다. 특히 제천시, 옥천군, 보은군의 가정보호 비율이 낮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은 “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개별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로 대안양육 유형을 결정”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즉, 분리보호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충북의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형으로 보호조치 되고 있다.

< 2021년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현황 >

(단위 : 명)

구분	총 발생 아동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조치내용														
			계	가정보호						시설입소							
				소계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입양	입양전위탁	소계	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청주시	55	25	30	16	53.3%	15	50.0%	-	-	1	14	46.7%	9	-	-	5	-
충주시	9	1	8	5	62.5%	5	62.5%	-	-	-	3	37.5%	3	-	-	-	-
제천시	84	42	42	6	14.3%	6	14.3%	-	-	-	36	85.7%	31	-	-	5	-
보은군	4	-	4	1	25.0%	1	25.0%	-	-	-	3	75.0%	1	2	-	-	-
옥천군	15	-	15	3	20.0%	2	13.3%	-	1	-	12	80.0%	4	-	-	8	-
영동군	7	-	7	4	57.1%	4	57.1%	-	-	-	3	42.9%	2	1	-	-	-
증평군	4	3	1	1	100%	1	100%	-	-	-	-	-	-	-	-	-	-
진천군	3	-	3	-	-	-	-	-	-	-	3	100%	-	-	-	-	3
괴산군	1	-	1	1	100%	-	-	-	1	-	-	-	-	-	-	-	-
음성군	26	-	26	13	50.0%	7	26.9%	-	2	4	13	50.0%	11	2	-	-	-
단양군	9	2	7	4	57.1%	4	57.1%	-	-	-	3	42.9%	-	-	-	3	-
합계	217	73	144	54	37.5%	45	31.3%	-	4	5	90	62.5%	61	5	-	21	3

■ 2021년 말 기준 도내 가정위탁아동은 420명, 비혈연 위탁은 13.8%로 낮아

2021년 말 기준 도내 가정위탁아동은 420명이며, 혈연관계에 의한 위탁이 86%에 달한다. 도내 가정위탁아동은 친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63.3%로 가장 높고, 친조부모·외조부모를 제외한 민법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의한 양육이 22.9%이다. 비혈연 위탁비율은 13.8%에 불과하다.

가정위탁아동 10명 중 9명이 혈연관계 의해 위탁되어 양육되고 있다. 도내 보호대상아동들이 시설형이 아닌 가정형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혈연위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충북도내 가정위탁아동 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혈연관계				비혈연	
		친조부모·외조부모		친족 (친·외조부모 제외)			
청주시	165	106	64.2%	24	14.5%	35	21.2%
충주시	51	26	51.0%	18	35.3%	7	13.7%
제천시	41	18	43.9%	19	46.3%	4	9.8%
보은군	18	13	72.2%	4	22.2%	1	5.6%
옥천군	8	3	37.5%	3	37.5%	2	25.0%
영동군	26	18	69.2%	4	15.4%	4	15.4%
중평군	11	10	90.9%	1	9.1%	-	-
진천군	37	25	67.6%	12	32.4%	-	-
괴산군	10	9	90.0%	1	10.0%	-	-
음성군	27	20	74.1%	3	11.1%	4	14.8%
단양군	26	18	69.2%	7	26.9%	1	3.8%
계	420	266	63.3%	96	22.9%	58	13.8%

* 2021년 말 기준

■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권고 지키는 곳 단 한 곳도 없어
청주시와 괴산군 월 30만 원도 안 돼
보건복지부 아동연령 고려해 차등지급 권고(월 30~50만 원)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양육보조금은 월 30~50만 원(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이다.

만7세미만 (83개월까지)	만7세부터 만13세미만 (84개월~155개월)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포함	비고
월 30만원 이상	월 40만원 이상	월 50만원 이상	

그러나 도내 지방정부 중 보건복지부 권고를 준수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충주시를 비롯해 도내 9개 시·군은 연령 고려 없이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청주시는 월 29만 원, 괴산군은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청주시와 괴산군의 양육보조금은 보건복지부의 만 7세 미만 아동 지원 권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르다. 상급학년 진학부터 교육비, 교통비, 용돈 등 추가로 요구되는 양육비가 발생한다. 보건복지부가 연령에 따른 차등지급을 권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육비가 부족해 위탁가정이 사비를 들여 위탁아동을 돌보아야 한다면, 아동은 눈치를 봐야 하고 위탁가정도 힘들고 어려워진다. 이는 가정위탁 활성화도 가로막는 일이다. 지방정부는 위탁아동의 양육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아동 연령을 고려해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적어도 보건복지부의 최소 권고 기준은 지원해야 한다.

< 도내 자치단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현황 >

구분	만7세미만 (83개월까지)	만7세부터 만13세미만 (84개월~155개월)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포함
괴산군	25만원	25만원	25만원
청주시	29만원	29만원	29만원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30만원	30만원	30만원

* 2022년 4월 기준

■ 도내 10개 기초지방정부 신규 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안 해

보건복지부는 신규 책정 위탁가정에 위탁아동의 초기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의 소요 비용으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 지원을 권고한다. 현재 위기 아동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아동용품구입비	- 지원대상 : 신규 책정 위탁가정. 최초 1회 지급 - 지원내용 :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	--

도내에서 위기아동 외에 신규 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를 지원하는 곳은 영동군이 유일하다. 영동군은 최초 신규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5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그 외 청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규 가정위탁 시 위탁가정은 아동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구입해야 한다. 아동용품구입비는 이를 위한 비용이다. 지방정부는 아동용품비를 지원해 위탁가정이 신규 위탁아동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내 지방정부 신규 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현황 >

구분	아동용품구입비	비 고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없음	
영동군	1회 50만원	

■ 일시위탁보호비, 도내 10개 기초지방정부 지원 안 해

일시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으로 보호기간은 3개월이며,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일시가정위탁가정에 일 3만 원 이상 일시위탁보호비 지급을 권고한다. 단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일시위탁보호비	- 지원대상 : 일시위탁부모 - 지원내용 : 일 3만원 이상 지급 권고
---------	--

도내 기초지방정부 중 영동군이 일시위탁보호비 일 3만 원을 유일하게 지원한다. 영동군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은 지원하지 않는다.

일시위탁가정이 위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기간 동안에도 아동을 보호·양육하기 위한 비용은 발생한다. 보호기간이 짧다고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보호대상아동이 일시위탁가정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양육되기 위해서는 일시위탁보호비를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 도내 지방정부 일시위탁보호비 지원현황 >

구분	일시위탁보호비 지원	비 고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없음	
영동군	일 3만 원	

■ **저출생 시대, 충북도지사 등 위탁아동과 위탁가정 지원 확대해야**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는 위탁아동이 부족한 양육비 등으로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적응하며 양육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 비용이 부족해 위탁가정이 사비를 들인다면 위탁아동은 스스로 위축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처음 위탁아동에 대한 아동용품비와 위탁아동 연령을 고려한 양육보조금 지원, 일시위탁아동에 대한 일시위탁보호비 등은 최소한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은 지원해야 한다. 특히 양육보조금은 연령을 고려해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아울러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충북도가 역할을 해야 한다. 충북도가 보건복지부 권고 금액을 기준으로 매칭해 일부 지원한다면 도내 시·군이 최소한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은 지원할 것이다. 저출생 시대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다.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가 위탁아동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겨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위탁아동은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 충북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이 위탁아동의 성장과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참고로 충북도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지만, 충남도는 위탁아동 양육보조금으로 월 6만 원, 1년에 72만 원을 기초지방정부 지원 외에 도가 추가 지원한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은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은 없는지 세밀히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잘 보호되고 있는지, 심리적·정서적·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위탁가정이 위탁아동 양육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 꼼꼼히 살펴 보완해야 한다.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받고 있는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적정한지 등도 점검해 보강해야 한다. 위탁아동은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기대 자란다.

■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 활성화에 지방정부 적극 나서야

가정위탁지원센터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 인식개선 및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 보호조치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적어도 우리지역 보호대상아동이 위탁가정이 부족해 시설로 가는 일은 없도록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장, 위탁아동의 기댈 언덕 되어야

충북도지사 등 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의 관심에 따라 위탁아동의 성장과 양육환경은 더 나아질 수 있다.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을 세심히 살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가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도내 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는 현재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제공 가능한 구조인지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 적절한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 위탁아동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장이 위탁아동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돼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가가 위탁아동을 지원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끝.